

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71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10.15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정이유

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2378호, 제정 2014.1.28)이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

□ 주요내용

- 택시발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함.
(안 제5조)
- 시장의 책무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정함.
(안 제4조, 제7조)
-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정함.(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)
-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- 보조금 관리감독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)

□ 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□ 관련법령발췌서 : 붙임2

□ 입법예고(결과)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5.7.15.~8.3.)

□ 기타참고사항

- 경기도 타 시·군 제정 현황 : 붙임3
- 방침 결정문 : 붙임4

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택시운송사업” 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(區域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“일반택시운송사업” 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.
 - 나. “개인택시운송사업” 이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택시운송사업자” 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택시운수종사자” 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에 따라 운전 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, 운전자·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·안심서비스 강화,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지원,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
2.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,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
3.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,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,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

4.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,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
5.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조(종합계획 수립)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,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3.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6조(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)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, 택시운수사업자, 공공기관,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)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,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.

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택시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한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2.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3.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
4.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,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안산시의회 의원,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·시민단체·관련 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2.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11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계장이 되며,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13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(재정지원 사업)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1.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2. 지하철·버스·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
 3. 운임, 요금결재시스템,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·개선·운영사업
 4.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
 5.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,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
 6. LPG(부탄) 택시연료를 경제적·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
 7.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및 문화·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
 8.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
 9. 출근길·퇴근길 교통봉사,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
 10.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
 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-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6조(관리·감독)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택시운수종사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·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·사용하여야 하며,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제17조(자료 제출)**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대중교통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대중교통과장 이승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택시계장 김진만
	담당자 성명·전화	엄경옥 (행정 2956)